

제1차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

의안	제2026-1호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(안)				
일시	2026.04.02. 13:30~14:30.				
장소	11층 도약룸	간사	총무처 조달팀장 진상훈 (인)		
참석위원	6명	결석위원	-	기타참석자	2명

심의결정사항 :

- 제2026-1호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(안)을 별첨과 같이 원안 의결함

<별 첨>

제1차 계약심의위원회 발언요지

1. 회의일시 : 2026.04.02. 13:30~14:30.

2. 회의장소 : 한국석유공사 본사 11층 도약룸

3. 참석자

○ 위원장(1) : 총무처장 노상무

○ 위 원(5) : 법무팀 담당역 이성호, ESG경영처 윤리경영팀장 이상하, 총무처 총무팀장 손봉섭, 총무처 시설관리팀장 임시형, 석유비축처 비축안전팀장 이용재

○ 간 사(1) : 총무처 조달팀장 진상훈

4. 주요 발언요지

○ 제2026-1호 : (합자)모아관광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다.

발언요지

○ 위원장 : 금일 재적위원 2/3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.

○ 간사 : (안전 설명)

○ 위원장 : 동해지사 입장을 비축안전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비축안전팀장 : 동해지사는 (합자)모아관광의 위반행위를 관련규정에 의거 부정당 행위로 판단하여 6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.

○ 위원장 : 업체가 위·변조한 4대 보험완납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는 어떤 단계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?

○ 간사 : 기성·준공 후 대금 지급 요청 시 업체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.

○ 위원장 : (합자)모아관광측의 제출 의견을 바탕으로 제재기간 감경에 고려할 만한 상황은 있을까요?

○ 법무팀 담당역 : 대금 납부 시 납세증명서 제출은 법령에 명시된 의무로 업체가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주장은 감경사유로 고려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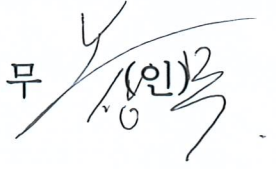
- 윤리경영팀장 : ‘25년은 한번이 아니라 제출서류를 모두 위·변조한 것인가요?
- 간사 : 네. 해당 용역은 매월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건으로 ‘25년 1~12월 까지 총 12회 모두 위·변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총무팀장 : 수차례 위·변조 행위가 있었으므로 감경규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.
- 법무팀 담당역 : 본 사건은 고의 위·변조에 해당되고 관련 규정의 감경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6개월 제한이 타당하다고 봅니다.
- 시설관리팀장 : 저 또한, 업체가 고의로 여러 번 계약 관련 서류를 위·변조했기에 본 사안은 감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.
- 윤리경영팀장 : 동해지사에서 ‘25년 증명서의 위·변조를 확인 후 구두경고 하였음에도 ‘26년 재차 위·변조한 사실을 감안할 때 감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
- 비축안전팀장 : 동해지사 입장도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을 희망하며 저 또한 본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6개월 제재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.
- 위원장 : 동 건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고,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 및 횡수 등 제재기간을 감경할 만한 사유를 찾기가 어려운 점, 현재도 업체가 미납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참여위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에 동의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합니다.

○ 제2026-1호 : (합자)모아관광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다.

2026.04.02.

위원장 총무처 총무처장

노 상 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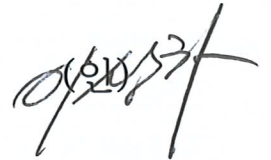
위 원 법무팀 담당역

이 성 호



ESG경영처 윤리경영팀장

이 상 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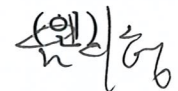
총무처 총무팀장

손 봉 섭



총무처 시설관리팀장

임 시 형



석유비축처 비축안전팀장

이 용 재

